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1호 2006년 3월 pp.71~88
한국세무학회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서희열** · 정규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이므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04년에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자 및 목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농업소득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농업법인 과세제도, 농업소득평준화제도, 농업소득세

* 심사과정에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강남대학교 세무학부 교수, suhhy@kangnam.ac.kr, 031-280-3810,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jungkyu@korea.ac.kr, 041-860-1526, 공동저자(교신저자)

I. 서 론

1990년을 전후하여 농업시장의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업에도 기업과 같은 조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89년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가족농 이외의 기업적 농업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동년 11월에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¹⁾

정부가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법인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의 발달은 더디기만 하다. 2000년에 5,208개이던 농업법인이 2001년에는 2,167개로 줄었으며, 2002년에는 5,598개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 5,432개, 2004년에 5,492개로 줄어 들었다(<표 2> 참조). 그리고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도 매우 미약하다. 2004년 자료를 보면 결산서를 작성하는 2,130개 법인 중 결손을 보고한 법인은 596개 법인으로 28%에 달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농업법인의 출자금 평균은 225백만원으로 정부지원인 정부보조금과 정부융자금의 법인 당 평균잔액 690백만원의 33%에 불과하여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7> 참조).

진행 중인 쌀 협상과 WTO/DDA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FTA가 확대되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대폭적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경쟁 심화를 초래하고 농업법인 수익성의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 김용택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따른 주요 품목별 소득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쌀 생산액은 2003년 대비 2013년에 개발도상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2조5천억원,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는 3조2천억원의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고추는 같은 기간에 5,080억~5,590억원 정도 감소하고, 마늘은 850억~1,37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양파는 480억~7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1,360억~1,640억원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며, 배는 10억~33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고자 한다.

1)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이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었으며,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규정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였다. 이후 1998년에 농업법인의 설립 근거가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농업법인의 제도적 체계와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농업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연구로는 박문호·전익수(2000), 김정호 등(2004) 등을 들 수 있다.

박문호·전익수(2000)는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검토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법인경영의 평가를 토대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발전 방향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김정호 등(2004)은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기업농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조세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보면 농업소득세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세율은 추후 농업소득세를 개정 시 소득세율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후 취득하는 것은 현행대로 50% 감면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작물재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농업(법)인이 농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처리되도록 행정자치부 해석지침 변경하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업용 자재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영세율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

2. 농업법인의 제도적 체계

농업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삼아 설립되며, 제도의 취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법인을 육성하여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법인의 유형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이 두 법의 규정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이러한 제안 중 농업소득세 부과 일정기간 유예, 창업 후 2년 내 취득하는 농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작물재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 등 대부분은 2004년말과 2005년초의 세법개정에서 반영되었다.

〈표 1〉 농업법인의 제도적 체계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 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 근거	농업농촌기본법 15조	농업농촌기본법 16조
설립 자격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발기인 수	농업인 5인 이상	합자회사 : 유·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 주식회사 : 3인 이상의 주주
준 조합원	의결권 없음 준조합원의 출자한도: 제한 없음	비농업인의 의결권 인정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지분에 비례
사 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며, 199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규모 영세농의 협업농으로 성격이 규정되었으나, 1993년 및 1994년의 법 개정으로 설립 요건, 조합원 자격, 사업내용 등이 크게 확충되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3/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하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농업법인의 현황

농업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의 경우 제도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농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간척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 이후 소유 제한이 예외로 취급되어 비농민의 소유가 가능하였으나, 간척지의 기업농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까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던 농지를 농업인에게 분양함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농장만이 운영되는 실정이다(김정호 외 2004).

정부의 농업법인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의 발달은 더디기만 하다. 2000년에 5,208개이던 농업법인이 2001년에는 2,167개로 줄었으며, 2002년에는 5,598개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 5,432개, 2004년에 5,492개로 줄어들었다.

〈표 2〉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수

연도	공동운영	개별운영	계
2004	3,530	1,962	5,492
2003	3,442	1,990	5,432
2002	3,419	2,179	5,598
2001	3,146	2,021	5,167
2000	3,366	1,842	5,208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4년 말 자료에 의한 농업법인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4년 말 현재 농업법인은 총 10,402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이 8,444개(81%)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958개(19%)이다. 농업법인 중 운영 중인 곳은 5,492개(53%) 이고, 휴업중인 법인이 3,966개(38%), 법인설립 후 사업 준비 중인 법인이 944개(9%)이다.

운영 중인 법인 중에서 외형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출자농가가 개별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1,962개(19%)이며, 출자자들의 공동운영 법인은 3,530개(34%)이다. 공동운영 법인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작물재배업이 1,412개, 가축사육업이 511개, 기타 업종이 1,607개이다. 기타 업종은 가공업이 468개, 유통업이 507개, 농업서비스업이 366개, 창고업이 277개이다.

출자자들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3,525개 법인의 평균 출자금은 225백만원 수준이며, 장부 작성 실태는 결산서를 작성하는 법인이 2,130개(60%), 간이기장 하는 법인이 701개(20%),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법인이 694개(20%)였다. 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64%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간이기장과 미기장의 비율은 36%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44%만이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간이기장과 미기장의 비율은 56%에 달하였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2,130개 법인의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654개로 31%였고, 1억원 미만인 법인이 585개로 27%,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가 42%였다. 법인 유형별로 살펴보

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의 비율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모두 31% 였고, 매출액 1억원 미만인 법인 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이 10% 많았다.

〈표 3〉 농업법인의 현황-2004년말 현재

(단위: 개)

구분	합계	운영 중						사업 준비중	휴업 등
		공동운영				개별 운영	소계		
		작물재배	가축사육	기타	소계				
영농조합	8,444 (81%)	1,108	452	1,337	2,897	1,528	4,425	868	3,151
농업회사	1,958 (19%)	304	59	270	633	434	1,067	76	815
2004년계	10,402 (100%)	1,412 (14%)	511 (5%)	1,607 (15%)	3,530 (34%)	1,962 (19%)	5,492 (53%)	944 (9%)	3,966 (38%)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표 4〉 농업법인의 기장 유형과 자본금 - 2004년말 현재

(단위: 개)

구분	기장 유형			계	법인당 출자금 (백만원)
	결산서 작성	간이기장	미기장		
영농조합	1,853 (64%)	539 (19%)	504 (17%)	2,896 (100%)	217.6
농업회사	277 (44%)	162 (26%)	190 (30%)	629 (100%)	257.0
계	2,130 (60%)	701 (20%)	694 (20%)	3,525 (100%)	224.7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표 5〉 결산 농업법인의 매출액 분포 - 2004년

(단위: 개)

구분	매출액				결산 법인수 계
	1억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 이상	
영농조합	485 (26%)	549 (30%)	250 (13%)	569 (31%)	1,853 (100%)
농업회사	100 (36%)	71 (26%)	21 (7%)	85 (31%)	277 (100%)
계	585 (27%)	620 (29%)	271 (13%)	654 (31%)	2,130 (100%)

자료: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2,130개 법인 중 2004년에 결산을 보고한 법인은 596개 법인으로 28%였다. 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26%의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37%의 법인이 결산을 보고하였다. 자산의 평균은 영농조합법인이 12억원, 농업회사법인이 19억원 이었으며, 부채의 평균은 영농조합법인이 8억원, 농업회사법인이 13억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이 평균적으로 자산·부채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결산 농업법인의 손익 분포와 재무상태 - 2004년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이익 법인	결손 법인	결산 법인수 계	자산	부채	자본
영농조합	1,362 (74%)	491 (26%)	1,853 (100%)	1,167	770	397
농업회사	172 (62%)	105 (37%)	277 (100%)	1,938	1,314	624
계	1,534 (72%)	596 (28%)	2,130 (100%)	1,267	841	427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2004년말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업법인은 1,870개이며, 이들 법인 당 평균 정부보조금은 264백만원이었다. 정부융자금을 받고 있는 농업법인의 수는 1,210개이며, 이들 법인 당 평균 정부융자금 잔액은 426백만원이었다. 농업법인의 자체 출자금 평균은 225백만원으로 정부지원(보조금+융자금=690백만원)의 33%에 불과하여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농업법인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정부융자금 현황 - 2004년말 현재

구분	정부보조금			정부융자금		
	법인 수 (개)	금액 (백만원)	법인당 평균 (백만원)	법인 수 (개)	금액 (백만원)	법인당 평균 (백만원)
영농조합	1,472	439,112	298.3	962	442,089	459.6
농업회사	398	54,896	137.9	248	72,823	293.6
계	1,870	494,008	264.2	1,210	514,912	425.5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Ⅲ. 농업법인 과세제도

1. 농업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농업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되게 되며, 이러한 2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 납부액은 법인세 계산 시 세액공제된다(법인세법 58의2). 그러나 공제대상인 농업소득세 납부액이 법인세 세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초과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2.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가.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얻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업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천200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월수/12)”만큼 법인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3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①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②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68①).

나. 농업법인의 농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농산물의 가공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 및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6①(3)).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업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266⑦).

- ①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법률 7332 부칙 5). 2005년 1월 5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도 귀속 농업소득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④, 68②).

농지 또는 초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농민이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지분이 총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동 금액에 대한 1일 1만분의 3의 율의 이자상당액을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도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만 당해 납부규정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농작물생산업·축산업·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처분 시에 과세되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66⑦, 68③).

4.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66②).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즉,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시킨 것이다.

IV. 농업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 농업소득 과세유예 기간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불균등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법률 7332 부칙 5).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4년 귀속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가 유예된다.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말까지는 농업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2.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당기순이익과세란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세무조정만 하고, 나머지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한 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72).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허용되는 조합법인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의 장점은 첫째, 접대비와 기부금을 제외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므로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세율이 낮다. 일반기업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이다. 반면에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1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7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법인(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따라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감면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132①).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는 ①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②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 ⑤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당기순이익과세에 의하여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각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72②) 당기순이익과세제도의 허용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일몰규정이므로, 작물재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의 한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대부분의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세액공제,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후 세액이 감면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32).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10%,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초과부분은 15%로 규정되어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최저한세의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66조와 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감면이 그대로 인정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부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

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132①(4)).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50%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전의 $13\% \times 50\% = 6.5\%$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25\% \times 50\% = 12.5\%$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서 최저한세 적용 후에는 13%로 증가하게 된다. 만일 농업소득외의 소득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이 10%로 적용된다.

〈표 8〉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부담률

과세표준	최저한세 적용 전 (법인세율×감면율)	최저한세 적용 후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님
1억원 이하	$13\% \times 50\% = 6.5\%$	10%	13%
1억원 초과 - 1천억원 이하	$25\% \times 50\% = 12.5\%$	10%	13%
1천억원 초과	$25\% \times 50\% = 12.5\%$	N/A	15%

농업외소득은 특정 작물재배로 인한 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지방세법 197). 농업회사법인은 그 목적이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외소득은 농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 소득 중 작물재배업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동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세특례제한법 68조의 규정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4. 농업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문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일반기업에 비하여 추가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39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①).

첫째, 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의 사업(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둘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셋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지배(의결권 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04년 10월 5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중소기업 업종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다. 작물재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에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2002년 5월 20일 개정된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모기준이 없고 “그 밖에 모든 업종”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일 때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 9> 참조). “종자·묘목 생산업 및 어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이의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개정되었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 농업 관련 중소기업 규모기준

해당업종	규모기준	비고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그 밖에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제외한 작물 재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함

5. 농업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연장과 농업소득 평준화 제도 도입

농업은 그 특성상 연도별 소득의 변동이 심하다. 그 첫째 이유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 시에 수년간은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이 발생하고 수확시기에 집중하여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년간 생산기간의 생산원가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자본화 하더라도, 자본화 시킬 수 없는 일반관리 비용 등으로 인하여 생산기간에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농업은 병충해의 발생, 자연 재해, 생산량의 변동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연도별 소득의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일반 사업에서 발생된 순영업손실(NOL)에 대해서는 2년간 소급공제(carry back)되지만, 도난이나 재해로 인한 손실(Eligible Losses)에 대해서는 3년간 소급공제가 가능하고, 농업손실(Farming Loss)에 대해서는 5년간의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결손금의 1년간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4년 10월 세법개정으로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어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결손금의 1년간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결손이 발생한 해는 현금흐름이 매우 나쁠 것이므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농업법인의 도산가능성이 높다. 결손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 소급공제로 과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경우, 농업법인의 도산을 막을 수 있어 농업법인의 육성·발전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S corporation의 주주는 이 농업소득 평준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올해의 농업소득 중 일부를 과거 기준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올해의 소득이 높고 과거 3년 중 소득이 낮은 연도가 한해 이상 있는 경우에는 올해 농업 소득 중 높은 누진세율로 계산될 부분을 과거 기준연도의 낮은 누진세율로 계산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³⁾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3%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이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은 1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에 비하여 2배 정도이다. 따라서 작황이 좋아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어서는 사업연도와 병충해·재해·농산물가격 변동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가 있는 농업법인은 농업소득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6. 농업소득세율의 조정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하여 농업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이중으

3) 예를 들어 2005 과세연도의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2005년 농업 소득 중 과거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액(Elected Farm Income, EFI)을 차감하여 세금A를 계산한다. 2005년의 농업 소득에서 차감된 금액(EFI)을 기준연도 3으로 동일하게 나누어서 2002년, 2003년, 2004년의 농업소득에 각각 합산하고, EFI중 1/3이 가산된 이 금액에 각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거 3년의 세금B, C, D를 다시 계산한다. A와 B, C, D를 합친 금액에서 과거 연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여 2005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해의 농업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과거의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세금을 낮출 수 있다(IRS, 2005, Farmer's Tax Guide).

로 과세된다. 이러한 2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 납부액은 법인세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58의2). 따라서 농업소득세율이 법인세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아니라 농업소득세율로 과세되게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지방세법 205). 이러한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물론 2004년 귀속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가 유예되도록 세법개정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일몰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시켜야 할 것이다.⁴⁾ 농업소득세율은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개인의 소득세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세율을 소득세율에 맞추어서 인하하고, 법인세법 58조의 2를 개정하여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김태웅(2004)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소득세율을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이원화하여 각각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일치시키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2007년부터는 개인은 농업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게 되는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농업법인을 규모화하고,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농업소득세와 같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성격이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부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외의

4) 김정호 등(2004)의 선행연구에서도 농업소득세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규정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은 동 감면규정의 근본 취지를 반감시키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68조의 규정도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04년 10월 5일 시행령 개정으로 “작물재배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모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은 2002년 5월 20일 개정된 이후에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모기준이 없고 “그 밖에 모든 업종”으로 분류되어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규모의 적용에 있어 불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작물재배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농업은 그 특성상 연도별 소득의 변동이 심하다. 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일반 사업에서 발생된 순영업손실(NOL)에 대해서는 2년간 소급공제(carry back)되지만, 농업손실(Farming Loss)에 대해서는 5년간의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법인에 대하여 3년 정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소득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소득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올해의 농업소득 중 일부를 과거 기준연도 세율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업소득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소득 변동의 영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므로 농업소득세율이 법인세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아니라 농업소득세율로 과세되게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3%에서 40%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도 높다. 물론 2005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의 과세가 유예되도록 세법개정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일몰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율의 인하 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기성. 1997.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60.
- 김용택 · 임송수 · 박준기 · 문한필.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9.
- 김정호 · 김태곤 · 조성열. 2004.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 김태곤. 2003. 「농업 ·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용. 2004. 「농업법인 및 기업농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 미발표자료
- 농협. 2004. 「생활속의 세금」.
- 박문호 · 전익수. 2000.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희열 · 정규언. 2005.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연구보고서.
- 양병우. 2001. “기업농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1(1).
- 최세균 등. 2000.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실태와 요인분석」. 연구보고 R4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의식 · 문한필. 2004.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04.
- US Internal Revenue Service. 2005. Publication 225. Farmer's Tax Guide.
- US Internal Revenue Service. 2005. Publication 536. Net Operating Losses (NOLs) for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
- US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Tips - Agriculture. <http://www.irs.gov/>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Hi-Youl Suh* · Kyu Eon J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urrent tax law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suggests following reforms for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First, the tax exemption period of corporate income tax of cultivating crops should be agreed with that of individual agricultural income tax.

Second,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should be included the corporations which can be taxed based on accounting income according to Article 72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Third, application of Alternative Minimum Tax on the reduction of taxable income besides cultivating crop income of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is undesirable.

Fourth, "cultivating seed and seedling business" on Additional Table 1 of Enforcement Decre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Act should be replaced by "cultivating crop business".

Fifth, it is advisable to extend loss carry-back period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to three years, and to introduce agricultural income averaging system.

Sixth, in the long run, agricultural income tax rate should be decreased.

<Key words> tax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 agricultural income averaging, agricultural income tax

*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 Professor, Korea University